

#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3. 12. 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병두 의원의외 7인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 12. 7.
- 회부일자 : 1993. 12. 7.

다. 상정일자 : 제97회 정기회

- 제1차 운영위원회(1993. 12. 7)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병두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별표 3에 의한여비를'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로 개정(제8조1항)
2. '청주 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제8조2항)
3.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내용중 갑지와 을지의 구분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7, 찬성 7)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